

방송과 인권 등 권리에 관한 위원회 기구의 기능과 역할

矢澤章二

방송과 인권 등 권리에 관한 위원회 전무이사

이 글은 일본민간방송연맹이 발행하는 "월간민방" 1997년 8월호에 게재된 "시청자와 방송국 간의 양호한 관계를 위하여" 라는 특집논문중의 하나이며, 한동원 중재위원(전 한국언론연구원장)이 번역한 것이다 편집자 주

I. 설립취지

일본 우정성 방송행정국장의 자문기관인 <다채널시대에 있어서의 방송과 시청자에 관한 간담회>가 1년 4개월간의 심의를 거쳐 '96년 12월에 발표한 보고서에는 시청자로부터의 '방송법령·프로그램기준과 관련된 중대한 불만, 특히 권리침해와 관련된 불만'을 신청 받아 판단하는 불만대응기관의 필요성이 지적된 내용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설치형태로서 ① 공공적인 기관 ② 방송사업자의 자주적 기관 ③ 그 중간적인 형태로서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방송사업자가 설치하는 기관 등 세가지 방법이 병기되었다.

NHK와 민간방송연맹에서는 이러한 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협의한 결과 방송에 의한 인권 등의 권리침해의 피해를 구제하는 한편, 방송에 의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양자 공동으로 자주적으로 이를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그 역할은 기존의 NHK·민간방송연맹·민방각사의 불만처리기관 및 프로그램심의기관, NHK·민간방송연맹 양자공동으로 설치해 놓고 있는 프로그램항상 협의기관 등과의 역할 분담도 필요하므로, 방송에 의한 인권 등의 권리침해와 관련된 불만으로 좁혀서 심리하고 불만신청인 및 방송사업자에게 권고 또는 견해를 밝히는 기관으로 하기로 했다. 그것이 바로 지난 6월 설립된 <방송과 인권 등 권리에 관한 위원회>라는 긴 이름의 자율규제기구이다.

II. 취급될 불만의 범위

위원회가 취급할 불만의 범위는 △NHK와 민간방송연맹 가맹 각 사의 개별적인 방송프로그램과 관련된 불만 △ 방송법과 시행령·프로그램기준과 관련된 중대한 불만, 특히 권리침해와 관련된 불만 △ 방송된 프로그램에 관해 불만신청인과 방송사업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른 불만 △ 사법적으로 분쟁 중에 있지 않은 불만 등으로 하기로 했다.

따라서 △ CS 텔레비전방송이나 인터넷상의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 △ 방송윤리·취재윤리상의 문제에 대한 불만, △ 인권침해의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아직 방송사업자와의 협의가 끝나지 않은 불만, △ 법원에 판단이 맡겨진 불만 등은 위원회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방송프로그램에 의해 인권 등을 침해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쨌든 시간과 노력이 드는 재판에 제소하기 전에 비교적 간편하게 호소할 수 있는 기관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기쁜 소식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방송사업자에 대한 불만신청에 이은 <제 2 심적인 기구>라고도 불러 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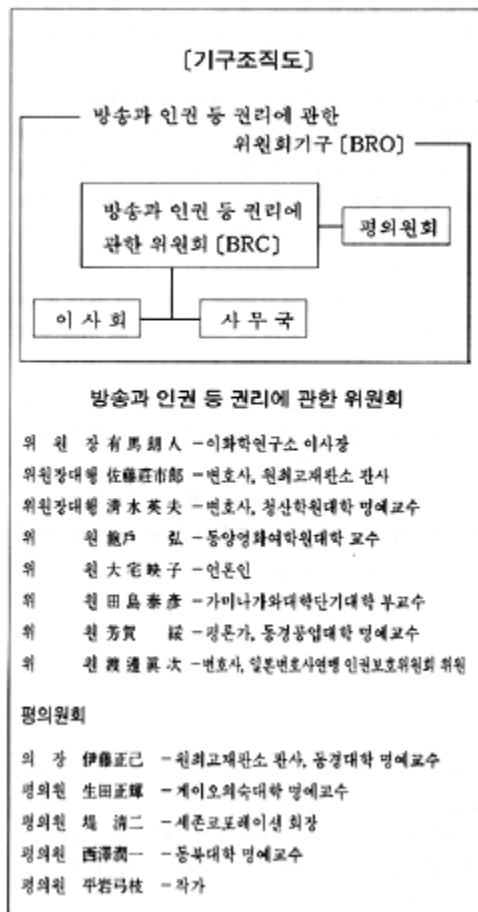
III. 조직의 구성

이 위원회는 당연히 방송사업자는 물론 어느 누구와도 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조직이어야 하는데 이를 떠받치는 모체가 있다. 별표와 같이 임의단체이긴 하지만 <방송과 인권 등 권리에 관한 위원회기구(약칭 BRO=<주>>)라는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이사회는 NHK와 민간방송연맹 양자가 선임하는 자로 구성한다. 그러나 위원회의위원을 이사회가 선임하게 되면 방송사업자에게 유리한 사람들이 선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는 평의원을 선임하고 평의원회가 위원회의위원을 선임하도록 하는 간접적인 선임체제를 취하기로 했다.

평의원 5명과 위원회 위원 8명은 별표에서와 같이 선임되었다. 특히 이 조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을 위원회의 위원은 앞에서 언급한 다채널간담회 좌장, 전 최고재판소 판사, 매스미디어의 윤리문제의 권위자, 사회심리학자, 저널리스트, 미디어법학자, 정치평론가, 인권옹호문제에 밝은 변호사 등 다채로운 면면들이다. 이들에게 그들이 지니고 있는 각각의 식견으로 신청된 불만에 대한 판단을 해주도록 한 것이다. 방송사업자의 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방송 측의 의향에 좌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보류되었다.

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는 사무국은 이사 2명이 상주하는 외에 신청된 불만내용을 조사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한 조사역 3명, 전화를 응대하는 전문가 2명, 일반직원 1명 등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는 NHK와 민간방송사에서 퇴직한 전문가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운용경비는 NHK(연간 6천 5백만원엔 = 약 5억 5천 3백만원)와 민간방송각사(연간 1억 3천만엔 = 약 11억 5백만원)의 회비로 꾸려 나간다.



IV. 심리의 절차

방송프로에 의해 명예, 신용, 프라이버시 등의 인권을 위시하여 권리를 침해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선 방송을 행한 방송사업자에게 불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BRO에 문의해 오면 절차 등을 안내 하게 된다.

불만신청인과 방송사업자 간에 해결을 보지 못하고 위원회의 권고나 견해를 구하고 싶을 때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면 전체적인 서면의 형식은 따지지 않으나 개요만은 정해진 서식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BRO에서는 조사역이 사전에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보고, 심리를 구한다. 위원회에서는 필요에 따라 불만신청인 또는 당해 방송사업자 측의 출석을 요구한다든가 방송사 측으로부터 테이프를 제출 받아 그것을 시청한다든가 하면서 심리를 한다.

심리방법이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운영요령과 같은 내규를 만들도록 했다.

일정한 심리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권고 또는 견해로 하여 불만신청인과 방송사업자에게 제시하며 동시에 이를 공표한다.

공표의 방법으로는 보도발표(기자회견), 당해 방송사에 의한 방송, BRO의 회보 등에 의한 주지 등을 생각하고 있다.

V. 운용상황

위원회는 한 달에 한번 정례회의를 갖기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사무국에서는 업무개시일인 '97년 6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달 동안 약 170건의 전화 또는 팩스를 받았다.

이 가운데에는 위원회가 곧바로 심리에 착수해야 할 만큼 요건을 갖춘 것은 없었으나 방송사측과 의논해 보면 그 결과에 따라서는 BRO에 불만신청을 하게 될 지도 모를 사례가 1건 있어 면담을 통해 사정을 청취했다. 이 밖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몇 건 있어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대책을 촉구하고 이와 함께 이 단계에서부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성실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그 밖의 불만으로는 어린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칠만한 프로그램은 방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각 사의 시청자센터의 대응이 좋지 않다는 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 가운데에는, 사건의 와중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어린이에 대한 취재를 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심각한 문의가 있었는데 제언을 주어 어느 정도 예방적인 역할을 다한 경우도 있었다.

VI. 앞으로의 과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위원회와 이를 떠받치고 있는 기구는 방송사업자 자신이 만든 것이다. 따라서 방송사업자는 이러한 조직에 인권 등의 권리침해로 인한 신청이 들어오지 않도록 평소부터 노력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 위원회에서 나온 권고, 견해, 제언은 반드시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NHK에서는 BRO의 기능개시에 즈음하여 방송총국장 명의로 전국의 방송국에 대해 '프로그램기준 핸드북', 'NHK 방송가이드라인'을 정독하여 취재·제작의 기본과 방송윤리에 관해 깊이 이해하고 불만에 대해서는 책임을 갖고 정확하게 대응하도록 요망했다.

또 민간방송연맹에서는 방송기준심의회의장의 명의로 가맹 각 사의 대표자에게 '시청자로부터의 의견이나 불만은 각방송사업자가 진지하게 받아들여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지적하고 사내에서의 '방송윤리에 관한 인식의 향상'과 '방송기준의 준수·철저'를 다시 한번 요청했다.

<주> Broadcast and Human Rights/Other Related Rights Organization
(위원회는 BRC[Committee]로 약칭되나 본고에서는「위원회」로 했다)